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배포일시	2021. 5. 3.(월) / 총 6매(본문3, 참고3)	
담당 부서	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	담 당 자	• 과장 유상철, 사무관 김일 • ☎ (044) 201-4655, 4657
보 도 일 시		2021년 5월 4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, 방송, 인터넷은 5. 3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기반,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지정 · 운영으로 민간참여를 높이겠습니다

- 4일부터 「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」 제정안 행정예고 -

□ **국토교통부**(장관 직무대행 윤성원)는 **지적재조사사업의 활성화**를 유도하고, 소규모 지적측량업체의 사업참여를 지원함으로써 **일자리 창출을 확대**하기 위한 「**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**」 제정안을 마련, **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행정예고**를 실시한다.

○ "**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**"는 그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업체의 **경쟁구도에서 탈피**,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**상생협력체계를 구축**하여 **민간업체의 사업 참여를 지원**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오는 **6월말부터 시행될 예정**이다.

□ 이번 「**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**」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❶ 책임수행기관 지정 · 지적재조사 업무의 위탁

○ 국토교통부장관은 **2주 이상의 공고**를 통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**지정신청을 받아 심사과정을 거쳐 지정**하며,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**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**을 거치도록 하였다.

○ 또한, 지적소관청이 **책임수행기관에게 위탁하는 업무범위***를 명시하고, 업무 위탁에 따른 **계약 체결사항**과 **위탁 측량수수료의 지급기준과 정산기준**을 마련하였다.

* ①토지현황조사, ②지적재조사측량, ③경계설정 · 조정, ④경계점표지 설치, ⑤지적확정예정조서 및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

책임수행기관 지정·취소		업무의 위탁		위탁 측량수수료 지급
• 지정 · 지정취소 신청 사항 •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	➡	• 업무위탁 범위 명시 •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	➡	• 측량수수료 지급기준 • 측량수수료 정산방법

❷ 민간 협력수행자 선정 · 협업

○ **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**은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**협력수행자를 공모**하여 평가를 거쳐 지적소관청(시·군·구)별 **최고점자를 선정**하도록 하였다.

○ 아울러, 책임수행기관과 협력수행자간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**사업추진 공정별 역할**을 명확히 하고, 지적재조사 업무의 **대행, 계약방법, 측량수수료 지급, 업무공정 비율** 등을 정하였다.

【 책임수행기관 협업모델 】

지구계 측량	**일필지 측량**	**면적측정 및 계산**	**토지현황 조사서 작성**	경계 조정·협의	확정 경계점 설치	경계 확정 측량	지적확정 예정조서 작성	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	이의신청 처리 및 성과물 작성
책임수행 기관	**협력수행자**			**책임수행기관**					

❸ 책임수행기관 운영

○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**공적역할을 정립**하고,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**전담조직 운영**과 행정·현장·기술·교육분야 등에 걸친 **각종 지원활동을 명문화**하는 등 **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**을 규정하였다.

【 책임수행기관의 공적 역할 】

운영계획 수립	전담조직 운영
· 측량·조사, 조직구성, 지원 등 계획 수립 ·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년 11월 말까지 제출	· 전국총괄 전담조직 구성 · 광역시·도 단위 조직·전담 측량팀 운영

➕

협력수행자 지원			
(행정)	(현장)	(기술)	(교육)
· 행정지원반 운영 · 소송·민원 대응	· 현장 컨설팅 · 지역전문가 운영	· 측량SW 지원 · 측량장비 운용 등	· 전문 교육과정 설치 · 측량·시스템 운용

➕

연구개발	홍보	예산
· 별도 연구조직 구성 · 촉진 및 활성화 등 연구개발	· 홍보계획 수립 · 지적재조사사업 홍보	· 자체예산 확보 및 집행

□ **국토교통부 남영우 지적재조사기획단장**은 "이번 규정 제정으로 **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**시킴으로써 한국판 뉴딜 정책의 기반인 **지적재조사사업을 2030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**[1]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"이라고 밝혔다.

□ 제정안 전문은 **국토교통부 누리집**(http://www.molit.go.kr)의 "정책자료/법령정보/입법예고·행정예고"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**2021년 5월 24일**까지 우편,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* 의견제출처 : (우)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/ 팩스 044-201-5678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김일 사무관(☎ 044-201-465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)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(2021~2030)('21.2.26. 고시)

참고 1 지적재조사 사업개요

□ **(추진배경)** 토지경계를 등록한 **종이 지적도면의 훼손·마모** 등으로 인해 **전국적으로 지적불부합지*가 발생**하여 **경계분쟁** 지속

* 지적공부상의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장경계가 불일치한 토지

<종이 지적도>	<지적불부합지 현황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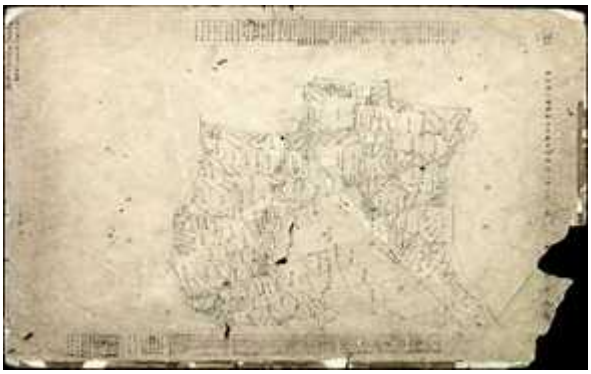	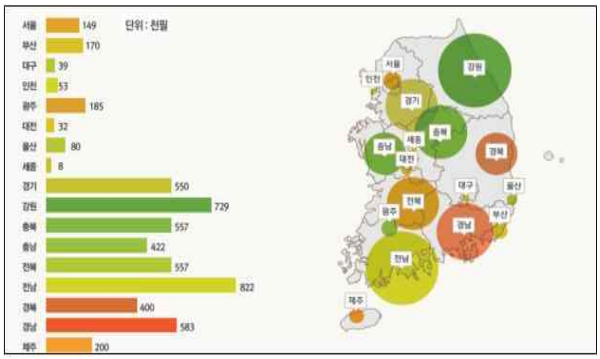

☞ 현 지적공부는 **토지조사사업**(1910~1918년)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되었고, 이에 따라 현재 전국의 14.8%(554만 필지)가 지적불부합지로 조사되었음

□ **(사업내용)**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**종이 지적공부**를 **최신 기술로 새롭게 등록**하면서 **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국가사업**

사업대상	사업기간	총사업비	근거법령
554만 필지 (전국 3,743만 필지의 14.8%)	'12 ~ '30 (19년간)	1조 3천억 원 ('12년 예타)	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('11. 9. 16. 제정)

□ **(추진체계 및 절차)** **국토부**(기본계획 수립, 사업관리), **시·도**(지구 지정), **시·군·구**(경계확정, 조정금산정), **지적측량수행자**(일필지조사 및 측량)

<사업추진체계>	<절차도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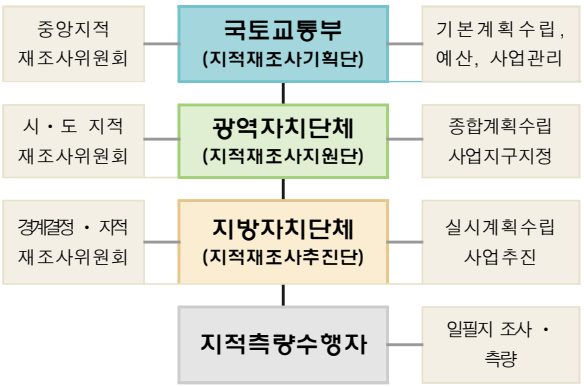	

참고 2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방안

【 책임수행기관 운영 】

【 책임수행기관 운영으로 달라지는 내용 】

구 분	현 행	개 선
재 원	• 국가예산(측량수수료)	• 국가예산(위탁수수료)
국고보조	• 국토부⇒지자체⇒LX/민간	• 국토부⇒지자체⇒책임수행기관 (일부 대행)
수행체계	• LX와 민간업체간 경쟁 및 지적재조사 측량·조사 대행	• 책임수행기관 위탁 수행 • 일필지측량 등은 업무대행
처리기간	• 사업지구별 약 1.5~2년 소요	• 사업지구별 1년 이내 완료
효 과	• 민간업체 참여율 7% • 사업기간 장기화	• 민간참여율 확대(7→30~40%) • 사업주기 단축(1.5~2→1년) • 공공 및 민간 일자리 창출 • 2030년 목표기간 내 완료

지구계 측량	일필지 측량	면적측정 및 계산	토지현황 조사서 작성	경계 조정·협의	확정 경계점 설치	경계 확정 측량	지적확정 예정조서 작성	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	이의신청 처리 및 성과물 작성
책임수행기관	협력수행자			책임수행기관					

참고 3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정안 주요내용

□ 제정 배경

○ (근거) 「지적재조사 특별법*」 개정으로 "**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**" 제도 도입

* 법률 제17744호, 2020.12.22. 공포, 2021.6.23. 시행

○ (목적) 지적재조사 **책임수행기관 지정 및 운영**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

□ 주요 제정내용

○ (책임수행기관 지정) **책임수행기관**의 **지정** 및 **취소 절차**를 정하고, 지정에 따른 **업무 위탁, 계약**, 측량수수료 지급 및 정산방법 등 **규정**

책임수행기관 지정·취소		업무의 위탁		위탁 측량수수료 지급
• 지정 및 지정취소 신청 사항 •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	➡	• 업무위탁 범위 명시 •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	➡	• 측량수수료 지급기준 • 측량수수료 정산방법

○ (협력수행자 선정) 책임수행기관은 **협력수행자**를 **공모**하여 **선정**하고, 업무 대행, 계약, 측량수수료 지급, **업무공정 비율** 등 **규정**

선정 공고		참여 신청		평가 및 선정		업무 대행		측량수수료
• 전자조달 등 • 공고기간 명시	➡	• 신청서식 • 시스템 참여	➡	• 평가기준 • 위원회 운영	➡	• 대행 범위 • 대행 개약	➡	• 지급시기 • 지급기준

○ (측량·조사 수행) **효율적**이고 **원활**한 **지적재조사 측량·조사** 등의 **수행**을 도모하기 위해 **책임수행기관** 및 **협력수행자**의 **역할**을 **명확히** 함

지구계 측량	일필지 측량	면적측정 및 계산	토지현황 조사서 작성	경계 조정·협의	확정 경계점 설치	경계확정 측량	지적확정 예정조서 작성	지상경계점 등록부 작성	성과물 납품
12%	22%	6%	7%	21%	5%	3%	3%	9%	12%

○ (책임수행기관 운영) **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**의 **공적역할 정립**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, 각종 지원 등 **운영**에 필요한 **세부사항 규정**